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,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포상 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,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·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‘평소 행실’과 ‘근무성적’을 삭제하고 ‘혐의 당시 직급’과 ‘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’을 추가(안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일부 개정)

나.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추가 및 명확화(안 제5조 제2항 제2호, 제9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및 제12호 내지 제15호 신설)

- 1) ‘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’, ‘부정청탁’, ‘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’도 징계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
- 2) 부작위·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
- 3)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으로 명확화

다. 인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·공정성 강화(안 제5조 제2항 및 제7

조 제2항 일부 개정)

1)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 제한 비위 해당 여부 결정

2) 필요한 경우 불문으로 의결 후 경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라. 소극행정의 정의를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과 통일(별표 1 일부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9. ~ 6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”을 “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”로 하고, “적극성, 뉘우치는 정도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”을 “적극성”으로 하고, “사정”을 “정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제2호 “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”을 “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소극행정

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14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
15.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

이하 같다)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경우”을 “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의결하였을 때에”를 “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관련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을 “관련도”로 하고, “평소 행실, 근무성적”을 “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”으로 하고, “정도”를 “정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”으로 하고, “사정”을 정상“으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3호 중 “공무원의”를 “공무원이”로, “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”를 “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”로, “업무행태”를 “행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(이하 “징계부가금”이라 한다)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(非違) 유형,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<u>평소의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, 뉘우치는 정도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,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, 별표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(이하 “징계등”이라 한다)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</u>		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규제 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밖의 정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~③ (생략)		②~③ (현행과 같음)		
제5조(징계의 감경) ① (생략)		제5조(징계의 감경) ① (현행과		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
1. (생략)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

3. ~ 8. (생략)

<신설>

9. ~ 1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같음)

② -----
----- 해당하는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소극행정

10. ~ 12. (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

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14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
15.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 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

제7조(의결서의 작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(不問)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“불문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”라고 적는다. 제8조(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, <u>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,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, 근무성적,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, 뇌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략)	<u>행</u> 제7조(의결서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</u> <u>----- 의결하</u> <u>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</u> <u>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에는 -----</u> <u>-----.</u> 제8조(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등</u> <u>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, 비위</u> <u>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</u> <u>향,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</u> <u>추거나 속인 정황, 뇌우치는 정</u> <u>도,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</u> <u>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그 밖의</u> <u>정상 -----</u> <u>-----.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【별표 1 징계기준】

현 행	개 정 안
※ 비고 3) 제1호라목에서 “소극행정”이란 <u>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.</u>	※ 비고 3) ----- <u>공무원</u>이 <u>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</u> -----.